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10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우재준 · 김위상 · 김태호
이성권 · 서천호 · 서일준
박충권 · 박정하 · 김소희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명문의 산정기준이나 산정위원회 설치규정은 없으나 축적된 판례와 학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기준 등 일정한 틀이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됨.

그러나 정신적 · 신체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나 산정 공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형사처벌 양형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위자료의 경우는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는 기구가 없어 국민의 불만과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형위원회를 참고하여 위자료산정위원회의 구성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

고 공정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9편 신설 등).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1항 중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편을 제10편으로 한다.

제9편(제81조의13부터 제81조의2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편 위자료산정위원회

제81조의13(위자료산정위원회의 설치) ①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으로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위자료산정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1조의14(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4. 공인된 대학의 의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2명

5. 공인된 대학의 의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1명

6. 경제학 또는 통계학 교수 1명

7.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81조의1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1조의16(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1조의17(위자료 산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 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태양(態樣), 피해의 정도 및加害자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회복 정도,加害자에 대한 제재 필요성

및 가해자의 재발 방지노력을 고려할 것

3. 유사한 유형의 손해에 대한 산정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
4.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위자료 산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손해의 유형 및 법적 성격
2. 피해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해자의 나이, 성별, 사회적·경제적 지위
4.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가해행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6. 가해행위 후의 정황
7. 통화가치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
8. 국민소득 수준의 변화
9. 유사 유형별 위자료 산정 사례
10. 그 밖에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1조의18(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분야 전문위원회
 2. 의료과오 분야 전문위원회
 3. 교통사고 분야 전문위원회
 4.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분야 전문위원회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
- ③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이하 “분야별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산업재해 분야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 관한 전문가
3. 산업의학 또는 관련 의료분야 전문의
4. 경력 5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

가 추천하는 사람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단체 중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산업재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의료과오 분야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전문가

3. 분야별 임상 전문의

4. 의료윤리 전문가

5. 그 밖에 의료과오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교통사고 분야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전문가

3. 교통사고 감정 전문가

4. 재활의학 또는 관련 의료분야 전문의

5. 그 밖에 교통사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분야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⑧ 위원장은 위자료 산정이 필요한 주요 유형에 따라 분야별 전문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⑩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1조의19(위자료 산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위자료 산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위자료 산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위자료 산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위자료 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20(운영지원단)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지원단을 둔다.

② 운영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운영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의21(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위자료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1조의22(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정이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23(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1조의24(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 분야별 전문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청탁하거나 청탁을 받는 행위
3.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제81조의25(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분야별 전문위원 및 제81조의21에 따라 조사·연구를 수행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의26(위임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p> <p>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 ③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p> <p>-----</p> <p>-----</p> <p>-----</p> <p>-----</p> <p>----- <u>이하</u></p> <p><u>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u>-----</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9편 위자료산정위원회</u></p> <p><u>제81조의13(위자료산정위원회의 설치) ①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으로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위자료산정위원회(<u>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u></p> <p><u>② 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u></p>

된 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1조의14(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교수 이상의 교수

4. 공인된 대학의 의학 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

<신 설>

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2명

5. 공인된 대학의 의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1명

6. 경제학 또는 통계학 교수 1명

7.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⑥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81조의1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81조의16(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81조의17(위자료 산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 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태양(態樣), 피해의 정도 및 가해자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 할 것

2.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회복 정도, 가해자에 대한 제재 필요성 및 가해자의 재발 방지노력을 고려할 것

3. 유사한 유형의 손해에 대한 산정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 할 것

4.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위자료 산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손해의 유형 및 법적 성격
2. 피해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해자의 나이, 성별, 사회적·경제적 지위

4.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가해행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6. 가해행위 후의 정황
 7. 통화가치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
 8. 국민소득 수준의 변화
 9. 유사 유형별 위자료 산정 사례
 10. 그 밖에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 ④ 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1조의18(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분야 전문위원회
2. 의료과오 분야 전문위원회

3. 교통사고 분야 전문위원회

4.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분야 전문위원회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

③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분야별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 분야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 관한 전문가

3. 산업의학 또는 관련 의료분야 전문의

4. 경력 5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단체 중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산업재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의료과오 분야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전문가

3. 분야별 임상 전문의

4. 의료윤리 전문가

5. 그 밖에 의료과오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교통사고 분야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전문가

3. 교통사고 감정 전문가

4. 재활의학 또는 관련 의료분야 전문의

5. 그 밖에 교통사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분야의 위자료 산정기준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⑧ 위원장은 위자료 산정이 필요한 주요 유형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⑩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 설>

제81조의19(위자료 산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위자료 산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위자료 산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위자료 산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위자료 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81조의20(운영지원단)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지원단을 둔다.

② 운영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운영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81조의21(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위자료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제81조의22(의견수렴) ① 위원회

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고 의견

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정이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81조의23(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81조의24(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 분야별 전문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p><u>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u> <u>을 약속하는 행위</u></p> <p><u>2.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에</u> <u>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u> <u>청탁하거나 청탁을 받는 행위</u></p> <p><u>3.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과</u> <u>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u> <u>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u> <u>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u> <u>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u></p> <p><u>제81조의25(수당 등의 지급) 위원</u> <u>회의 위원, 분야별 전문위원 및</u> <u>제81조의21에 따라 조사·연구</u> <u>를 수행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u> <u>범위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u> <u>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u> <u>급할 수 있다.</u></p> <p><u>제81조의26(위임규정) ① 이 법에</u> <u>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u> <u>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u> <u>규칙으로 정한다.</u></p> <p><u>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u> <u>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u> <u>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u></p> <p><u>제9편 법원의 경비</u></p> <p><u>제10편 법원의 경비</u></p>
--	--